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34
----------	------

2026년 3월 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6년 3월 5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목동재난체험관은 국내 최초 대심도 저류터널인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에 대한 홍보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을 디지털 장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임
- 재난 발생시 사고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디지털 체험 학습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 및 행동요령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임
-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종합운영 계



- 기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요구 사무 등

○ 위탁운영 예산 : 1,198백만원(3년), 376백만원('26년)

※ '26년 산출근거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지급기준』

○ 인건비 : 285,072 천원

- 내용 : 기본급, 퇴직적립금, 사회보험(연금,건강,요양,고용,산재)

○ 운영비 : 91,105 천원

- 내용 :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청소 등), 공공요금, 행사운영 등

### 3)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1항3호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3조(안전교육)

- 제1호 : 지역주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 실시

- 제2호 : 시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 위탁 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4) 민간위탁 필요성

○ 체험관 관람 연령대가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다양한 흥미와 이벤트 연계 등 참여 유도형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경험과 운영전략 필요

○ 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대외 홍보 협력, 재난분야 연구 조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전문 민간단

## 체 운영 필요

### 5)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6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26. 1.15.)
- 심의결과 : 적정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약칭 : 재난안전법)

- 제4조제1항(국가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제1항3호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1항1호 :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 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3조(시의 책무) 제1항 :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제5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1항 :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26년 예산반영)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목동재난체험관의 위탁 기간이 '26.5.29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관리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교육 서비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재위탁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현황

- 목동재난체험관은 국내 최초의 대심도 방재시설인 ‘신월빛물저류배수시설’의 홍보와 시민 재난·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총 사업비 93억원을 투입하여 '19.12월 양천구 안양천에 인접(안양천로 909)하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시설로,
- 1층(411㎡)은 안내·접수, 행정사무실, 빗물저류배수시설 홍보관 및 디지털 안전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419㎡)은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연재난 VR체험존, 재난안전체험관, 펌프 견학실 등 전문 교육 공간으로 구성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표] 참조).

[표] 목동재난체험관 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09



위 치 도



시설외관

○ 규 모 : 1층(411㎡), 2층(419㎡)

○ 운영방식 : 민간위탁(한국어린이안전재단 '20.3월~'26.5월)

○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	주요장비	이용목적
1층	로비 및 인포메이션	106	태블릿(미션수행), PC, 모니터, CCTV, 터치모니터, 계단형 휴게의자 등	시설에 대한 안내와 체험용 태블릿 PC배부
	빗물저류 배수시설 홍보관	75	디지털액자, 터치모니터, 모니터, 빔프로젝트, 스피커 등	신월배수시설 공사의 추진내용, 실시간 자연재난 속보확인, 해외유사사례, 배수시설 작동원리 설명
	디지털 안전체험관	120	터치모니터 (PC시스템,내장스피커), 발판센서, 방화셔터 등	탈출게임, 구조요청 체험 등 물리적 체험관, 각 재난에 대한 SW를 통한 게임으로 안전체험
	디지털 아카이브	68	PC 및 모니터, 책장 등	서울시 재난안전 자료검색 및 오프라인 자료 비치, 카페테리아
	행정사무실	42	PC 및 모니터, 책장 등	체험관 운영팀 사무실
2층	자연재난 VR체험존	108	VR, 모니터 및 PC시스템, 진동바이브레이터기	풍수해,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 체험
	미션체험 재난탈출	213	미션수행 모형, 스피커시스템, 빔프로젝트, 레이저소화기, 터치모니터 등	홍수, 태풍, 지진, 화재, 폭염, 가뭄 등 각종 자연재난 상황을 게임기반 학습으로 체험하며 미션수행
	펌프견학실	31	모니터, PC시스템, 스피커 등	게임종료 후 실제배수시설관람, 미션완료 사진촬영
	영상관	67	빔프로젝터, PC시스템, 스피커, CCTV 등	자연재난 행동요령을 CCTV녹화 영상을 통해 강평 및 복습

○ 시설내부



빗물저류 배수시설 홍보관



디지털 안전체험관



자연재난 VR체험존

- 목동재난체험관의 연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년 2억 98백만원에서 '26년 3억 76백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험객 수는 '20년 5,122명(방문:544명)에서 '23년 20,715명(방문:14,36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5년에는 18,714명(방문:13,153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참조).

[표] 목동재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실적

□ '20년~'26년 목동재난체험관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297,692	332,889	334,146	338,963	362,900	374,825	376,177

□ '20년~'25년 목동재난체험관 체험객 내역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방문 체험	544	507	8,731	14,360	11,763	13,153	49,058
온라인(ZOOM) 체험	-	10,088	6,242	4,183	4,191	2,642	27,346
유튜브	4,578	3,805	3,064	2,172	1,770	2,919	18,308
합 계	5,122	14,400	18,037	20,715	17,724	18,714	94,712

## ■ 목동재난체험관 민간위탁 추진 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19.8월 목동재난체험관 설립 당시 시설의 공공성 유지와 체험형 안전교육에 요구되는 전문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정<sup>2)</sup>하였으며, 같은 해 9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확보<sup>3)</sup>하였음.
- 이후, '19.12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sup>4)</sup>를 득한 후 '20.3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20.3.2.~'23.5.29.)하였으며,
-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23.5월)하자 조례 제12조<sup>5)</sup>에 따라 1회로 한정된 재계약('23.5.30.~'26.5.29.)을 체결<sup>6)</sup>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5.29일자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임(〔표 참조).

2) 서울 재난체험관 민간위탁 관련 (하천관리과-12062, 2019.8.16.)

3)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일자 : 2019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019년 9월 19일)
- 유 형 : 시설형 위탁
- 심의결과 : 적정

4)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19.12.16.(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원안가결)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6)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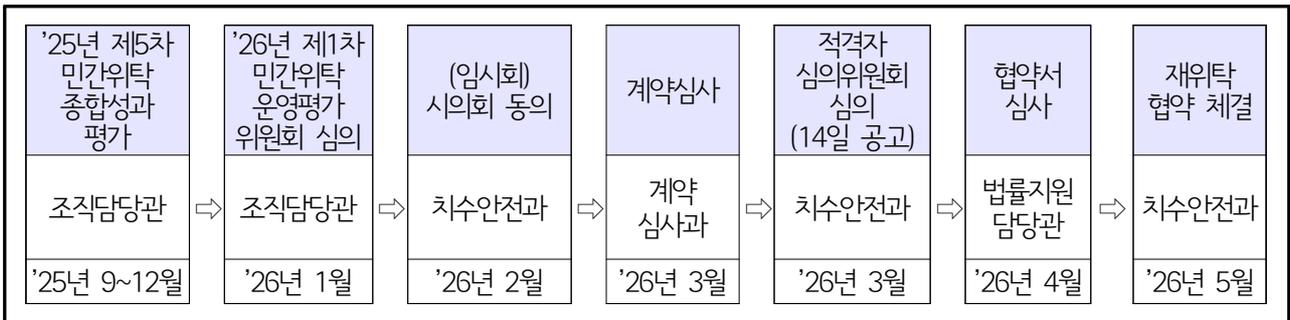
- 심의일자 : 2023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023년 3월)
- 유 형 : 시설형 재계약
- 심의결과 : 적정(권고)
- 권고사유 : 현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성과 등 재계약 추진근거(필요성) 보완
- 이행결과 : 적격자 심의('23.3.30.시행) 평가기준 항목점수를 추가하여 이행 완료함

[표] 목동재난체험관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최초 위탁	3년3개월 ('20.3.1. ~ '23.5.29.)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공개모집	
2차 위탁	3년 ('23.5.30. ~ '26.5.29.)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재계약	연장 1회
3차 위탁	3년 ('26.5.30. ~ '29.5.29.)	미 정	공개모집	재위탁 추진 중

○ 이에, 시는 조례 제4조의47)에 따라 '25.12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재검증받았으며8), 이를 근거로 금회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임([표] 참조).

[표] 목동재난체험관 민간위탁 추진 절차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8) 재위탁 심사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일자 : 2026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025년 12월)
- 유 형 : 시설형 재위탁
- 심의결과 : **적정(권고)**
- 권고사유 : 공모 넓게 홍보하여 다양한 법인 참여 유도 필요

- 참고로 금회 민간위탁 재위탁 예정 기간은 '26.5.30일부터 '29.5.29일까지 3년이며, 위탁운영비는 총 11억원(연간 3억76백만원)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음([표] 참조).

**[표] 목동재난체험관 민간위탁 재위탁 예산추계 내역**

<p>※ 산출근거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지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계액 : (285,072천원+91,105천원) × 3년 = 1,128,531천원</li> <li>○ 인건비 : 285,072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기본급, 퇴직적립금, 사회보험(연금, 건강, 요양, 고용, 산재)</li> </ul> </li> <li>○ 운영비 : 91,10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청소 등), 공공요금, 행사운영 등</li> </ul> </li> </ul>
---

**■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및 주요 검토의견**

- 목동재난체험관 사무는 '19.12월 최초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당시 공익성이 높아 원칙적으로는 직영 운영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고<sup>9)</sup> 일정한 공신력은 요구되나 민간 수행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허용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 운영방식 측면에서도 직영은 관리·감독의 직접성, 비용 절감, 투명성 확보에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 및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9)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있는 반면, 민간위탁은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과 인력관리의 탄력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등(〔표〕 참조)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sup>10)</sup>한바 있음.

〔표〕 목동재난체험관 운영방식에 따른 비교

구분	직영운영	민간위탁운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한 체험관 운영가능</li> <li>- 직접 관리감독 기능으로 체험관에 지속적인 관심 유지</li> <li>- 직접 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 비용 절감</li> <li>- 운영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투명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운영자의 전문적인 운영관리 서비스로 사업장 업무부담 경감</li> <li>- 위탁체가 여러 체험관을 위탁한 경우 체험관 간 정보교류를 통한 효율적 운영 가능</li> <li>- 강사 채용 및 인사관리 등의 업무지원으로 인력관리가 용이</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관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부족으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 어려움</li> <li>- 체험관 운영 강사 채용 등 체험관 운영에 대한 부담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 사업주의 비용 부담 증가</li> <li>- 부실 또는 부적합한 위탁운영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증가</li> </ul>

- 이러한 기존 심사에 비추어 볼 때, 본 시설의 소관 사무는 최초 위탁시점과 비교하여 별다른 상황 변경이 없고 체험형 안전교육에 요구되는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도 여전히 유효한바,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재위탁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방안으로 사료됨.
- 다만, 인근 강서구청에서 운영 중인 유사 재난안전 체험시설인 ‘마곡 안전체험관’에서도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표〕 참조), 목동재난체험관은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

10)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12.16.(원안가결)

■ 종합의견

- 재난체험관의 설립과 운영 취지가 다양한 재난체험 콘텐츠를 발굴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 민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도록 풍수해 대응 분야에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유사 시설과의 기능적 차별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표] 목동재난체험관 및 마곡안전체험관 비교

구 분	목동재난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
건립시기 (건립주체)	2019년 12월 (서울시 건립)	2024년 4월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교육청 협력 건립)
운영기관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강서구청
운영주체	민간위탁(한국어린이안전재단)	강서구청 자체운영
위 치	양천구 안양천로 909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규 모	1,252㎡(1~2층, 옥상)	3,822㎡(3층)
운영일	평일, 홀수달 두 번째 토요일 (회차별 운영)	1~3월, 8월 : 화~일요일 4~7월, 9월~12월 : 월~토요일
운영시간	평일 : 10시~17시 홀수달 두번째 토요일 : 10시~15시30분	9시~18시
이용대상	6세 ~ 성인	민방위대원, 학생, 일반 시민
이용요금	무료	무료
이용방법	홈페이지 예약	홈페이지 예약
콘텐츠	자연재난 (풍수해 강화)	4D 영상관 생활안전(학생&보건안전)
체험객	일평균 약 51.3명 (약 18,714명/년)	일평균 약 43.2명 (약 15,778명/년)
특이사항	목동빗물펌프장내 펌프시설 관람 연계	버스 충돌, 지진 등 6개 재난 체험 가능시설 구비

- 이를 위해 설립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시스템 고도화 및 체험 콘텐츠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과 교육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시의 추가적인 투자 확대도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34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목동재난체험관은 국내 최초 대심도 저류터널인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에 대한 홍보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을 디지털 장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임
- 나. 재난 발생시 사고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디지털 체험 학습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 및 행동요령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임
- 다.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민간 (재)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 시설개요

- 사업명 :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재위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5
- 준공일 : 2019.12.15.
- 규모 : 지상 2층, 연면적 1,252㎡ (건축면적 568㎡)



- 1층 : 인포메이션, 홍보관, 디지털체험관, 디지털아카이브
- 2층 : VR체험, 재난안전체험(홍수, 태풍, 지진, 쓰나미, 가뭄, 폭염), 종합 영상관(개인행동 리뷰 및 강평)

※ 옥상 : 안전행동 요령 설명패널, 휴게실

- 위탁법인 : 공개모집
- 운영인력 : 6명 (센터장 1명 외 5명)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6. 5.30. ~ 2029. 5.29.(3년)
- 위탁사무
  - 서울 재난 체험관의 종합운영계획 및 추진
  - 서울 재난체험관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재난교육 관련분야 연구조사, 대외 협력사업
  - 기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요구 사무 등
- 위탁운영 예산 : 1,198백만원(3년), 376백만원('26년)

※ '26년 산출근거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지급기준』

- 인건비 : 285,072 천원
  - 내용 : 기본급, 퇴직적립금, 사회보험(연금,건강,요양,고용,산재)
- 운영비 : 91,105 천원
  - 내용 :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청소 등), 공공요금, 행사운영 등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1항3호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3조(안전교육)
  - 제1호 : 지역주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 실시
  - 제2호 : 시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 위탁 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체험관 관람 연령대가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다양한 흥미와 이벤트 연계 등 참여 유도형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경험과 운영전략 필요
- 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대외 홍보 협력, 재난분야 연구 조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전문 민간단체 운영 필요

#### 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6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26. 1.15.)
-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약칭 : 재난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제1항(국가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li> <li>-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제1항3호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li> <li>-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1항1호 :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 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li> </ul>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3조(시의 책무) 제1항 :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제5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1항 :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26년 예산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이승아 (☎ 2133-3897)